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703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4월 25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와부읍 등 7개 읍·동의 복지지원
과에 속하는 사항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안 제1조(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제3조제2항제2호라
목 중 “제4호마목”을 “제3호마목과 제4호마목”으로 수정하고 같은
항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
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와부읍·진접읍·화도읍·진건읍·호평동·다산1동·별내동의 복지
지원과에 속하는 사항

나.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.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수정안

남양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조(「남양주시의회 위원회 조례」의 개정) 제3조제2항제2호라목 중 “제4호마목”을 “제3호마목과 제4호마목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와부읍·진접읍·화도읍·진건읍·호평동·다산1동·별내동의 복지지원과에 속하는 사항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자치행정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평생학습원, 대외협력사무소, 읍(출장소를 포함한다)·면·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 (<u>제4호</u>마목의 사항은 제외한다)</p> <p>3. 복지환경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·바. (생략)</p> <p>4. 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)</p> <p>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.</p> <p>1. (원안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다.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라.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제3호</u>마목과 <u>제4호</u>마목----- -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~ 라. (원안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마. <u>와부읍·진접읍·화도읍·진건읍·호평동·다산1동·별내동의 복지지원과에 속하는 사항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·사. (원안 마목 및 바목과 같음)</p> <p>4. (원안과 같음)</p>